



서울고등법원

제 6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4누69176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774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업비 중 국비 전액(380,000,00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2항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380,000,000원의 환수금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¹⁾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명시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사항 즉,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3. 20.자 최종 심의결과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²⁾

- 1) 환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2014. 1. 28.자 통보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2014. 3. 20.자 최종 심의결과 통보처분은 일종의 불복절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처분에 해당하는 2014. 1. 2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거나 다.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2쪽 12행의 "법인이다"를 "법인의 장이다"로 고친다.

(2)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통보를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8쪽 1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3) 제1심판결 중 제2항 부분(제1심판결문 8쪽 18행~10쪽 11행)을 삭제한다.

다. 추가 판단

설령 부채 비율의 허위 기재에 관한 처분사유까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을 제2호증)는 표지 및 목차와 함께 114쪽에 이르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피고가 지적하는 부채 비율에 관한 허위 기재 사항은 114쪽의 "VI. 수행기관 현황"³⁾ 중 부채비율 란에 '311.2%'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그러나 1쪽의 "I. 기업 현황 1. 기업 개요" 중 재무 상황 란을 보면

재무 상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자본총계	부채총계
	2007년도	11,923	31,578
	2008년도	1,689	68,069

2007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의 각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가

3) 이는 영리기관인 기업 지원자만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다.



	2009년도	3,790	79,052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2010년 6월말	33,766	105,076	

②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최근 2년 연속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 5호증) 중 "VI. 수행기관 현황" 항목에는 한 해의 부채비율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 자본 및 부채 액수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로서는 지원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1쪽에 기재된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를 확인하거나 지원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2008년과 2009년도 결산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③ 또한 원고 입장에서 부채비율 란에 '311.2%'라고 기재할 만한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0. 3. 주주총회에서 사업연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의결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2010. 8. 23.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는 2010. 6. 30. 결산된 재무제표인 원고의 제16기 재무제표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원받은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7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손철우

 판사 윤정근